

#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72호
2. 발 의 자 : 조상호 의원
3. 발의일자 : 2019. 1. 31.
4. 회부일자 : 2019. 2. 7.

### II .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18조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1.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의 공개 외에 운영위원회 심의 시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항).

###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안건 참고)
3. 기 타
  - 입법예고(2019. 2. 12.~2. 19.) 결과: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조상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72호로 발의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계획서, 설명서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 체계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공립유치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sup>1)</sup> 따른 법정필수기구로서 유치원규칙의 개정, 유치원 예산 및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유치원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제1항은<sup>2)</sup>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1)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교육법」

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공립유치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은<sup>3)</sup> 회의록 작성과 공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되는 회의록의 내용과 관련해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다소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심의와 관련된 계획서, 설명서, 각종 명세서 등의 참고자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과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22조의12가<sup>4)</sup>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해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은 시·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입법적 조치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공신력을 인정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하는 바,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공신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의 89.6%가 병설로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를 일부 교원이 담당하는 상황이므로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한다면 이를 위한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3, 2019.2.15.).

- 그러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서 심의 사항과 관련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저해된다고 볼 여지가 적으며, 학부모들의 알권리는 각종 자료의 공개에 따른 업무 과부하 보다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학부모 등의 헌법상 권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자료는 사전에 준비되어 심의 시 위원에게 배부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의7(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제22조의12(조례 등예외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